##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자활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 909

2023년 7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

# Ⅰ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: 2023. 5.30.

2. 제 안 자 : 서울특별시장

3. 회부일자 : 2023. 6. 1.

4. 상정일자 :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

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(2023. 6.27.)
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(2023. 6.30.)
  - 안건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
  - 원안가결

# Ⅱ. 제안설명의 요지 (기획조정실장)

□ 의안번호 제901호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 (안) 등 15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(안)에 대한 제안설명과 동일

# Ⅲ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엄지운)

## 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제909호, **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자활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23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## 2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### 1) 제안이유

- 가.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등 조정으로 사회복지기금(자활계정) 2023 년 수입·지출계획이 변경됨
- 나. 이에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1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서울특별 시 사회복지기금(자활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 고자 함

## 2) 주요내용

가.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2023년 수입계획상「예치금 회수」 금액이 당초 3,839백만원에서 3,886백만원으로 47백만원 증가함.

- 나. 서울광역자활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실집행잔액(발생이자) 등 반영으로 「기타수입」 금액이 당초 43백만원에서 10백만원으로 33백만원 감소 및 매입임대보증금환수계획('23년 1,765백만원)에 따른 「융자금회수 (이자포함)」 금액이 당초 800백만원에서 2,047백만원으로 1,24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,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지원 추가 수요조사 결과「민간융자금」 지출금액이 당초 265백만원에서 335백만원으로 70백만원이 증가함.
- 다.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「예치금」(재무활동) 금액이 당초 4,165백만원에서 5,356백만원으로 1,191백만원 증가하여 28.6% 변경되었음.

라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#### <수입계획>

#### <지출계획>

(단위 : 백만원)

(단위 : 백만원)

(211.722)				(211.722)				
구분	당초(A)	변경(B)	증감(B-A)		구분	당초(A)	변경(B)	증감(B-A)
계	5,041	6,302	1,261		계	5,041	6,302	1,261
융자금회수 (이자포함)	800	2,047	1,247	정 책	비 융 자 사 업	606	606	0
이 자 수 입	359	359	0	사 업 비	융 자 성 사 업	265	335	70
기타수입	43	10	△33	행 정	_, ,			
예치금회수	3,839 3,886	47	행 정 운 영 경 비	기 본 경 비	5	5	0	
			재 무 활 동	예 치 금	4,165	5,356	1,191	

## 3. 검토의견

-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'2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여유자금 12억 6,100만원을 수입계획중 융자금 회수(12억4,700만원), 기타수입(△3,300만원), 예치금 회수(4,700만원)에 각각반영하고,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에도 예치금(11억 9,100만원)과 융자성사업비(민간융자금 7,000만원)에 반영하고자 해당 계정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
- ○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1조1)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 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
  - 동 계정의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**일반예산(재무활동)**을 당초 지출계획보다 28.6%, 11억 9,100만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으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

<sup>1) 「</sup>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#### 〈표 3-1〉사회복지기금(자활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(단위: 백만원 %)

			( _ //	· ¬ 근 근, /0)
정 책 사 업 / 단 위 사 업 / 세 부 사 업	당 초 ( A )	기 금 운 용 계획변경안 (B)	증 감 (C=B-A)	증 감 률 (D=C/A)
지 출 합 계	5,041	6,302	1,261	25.0
저 소 득 시 민 자 활 지 원	871	941	70	8.0
일 반 예 산 ( 재 무 활 동 )	4,165	5,356	1,191	28.6
보 전 지 출 ( 자 활 지 원 과 ) (사 회 복 지 기 금 자 활 계 정 )	4,165	5,356	1,191	28.6
여 유 자 금 예 치	4,165	5,356	1,191	28.6
행 정 운 영 경 비 (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)	5	5		-

- ※ 자료근거: ①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사회복지기금(자활계정) 지출계획, ②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('23. 5.30) 재구성
- 아울러 동 계정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, '2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기존에 운용중인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의 수·지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
  -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」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2)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예치하고. 필

<sup>2) 「</sup>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」제7조(자활계정)

② 자활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<sup>1. 「</sup>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자 차액의 보전

<sup>2.</sup>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

<sup>3.</sup>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

<sup>4.</sup>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

<sup>5.</sup>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

<sup>6. 「</sup>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

<sup>7. 「</sup>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

가.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에서 대여받는 채무

나.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

<sup>8.</sup> 광역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

요시 추가적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됨

- 다만, 관련 법령은 "정책사업"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,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동 계정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을 "정책사업비, 행정운영경비, 재무활동비"로 기재하여 당초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인 ① 저소득시민 자활지원, ②일반예산(재무활동), ③행정운영경비로 기재하지 않고 있는 바,
  - 정책사업명을 편의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의회가 기금운용계획 변 경안을 심사하는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사례가 반 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
<sup>9.</sup>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

<sup>10.</sup>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·운영 지원

<sup>11.</sup>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찬회 등 사업 지원

<sup>12.</sup> 자활사업 연구·개발·평가 등을 위한 비용

<sup>13.</sup> 저소득 시민 자활사업 관련 단체 지도 · 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

<sup>14.</sup> 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시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(해당 연도 기금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 범위로 한정한다)

# Ⅳ. 질의 및 답변요지: 「생략」

Ⅴ. 토론요지: 「생략」

## Ⅵ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

- 1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 략
- 2. 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

#### 1) 소위원회 구성

○ 일 자 : 2023. 6.27.(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)

○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(의회별관 2층)

○ 위원구성 :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(11명)

- 위 원 장 : 이성배(주택공간)

- 부위원장 : 강동길(주택공간), 김영옥(보건복지)

- 위 원 : 송경택(행정자치), 김지향(기획경제),

이영실(환경수자원), 이종배(문화체육관광),

박칠성(도시안전건설), 김영철(도시계획균형),

김용일(도시계획균형), 경기문(교통)

## 2) 소위원회 예산안 심사

### O 제1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3. 6.29.(목) 14:00 ~ 16:00
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
- 참 석 : 소위원회 위원

- 내 용 : 기금운용계획안 등 조정 소위원회 운영

#### O 제2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3. 6.30.(금) 12:00 ~ 13:00
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
- 참 석 : 소위원회 위원

- 내 용 : 기금운용계획안 등 조정 소위원회 운영

Ⅵ. 부대의결: 「생략」

Ⅷ. 심사결과: 원안가결(2023. 6.30.)

# 2023년도 서울특별시 시회복지기금(자활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의 안 번 호 909

제출년월일: 2023년 5월 30일 제 출 자: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가.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등 조정으로 사회복지기금(자활계정) 2023년 수입·지출계획이 변경됨.

나. 이에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1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자활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2023년 수입계획상 「예치금 회수」 금액이 당초 3,839백만원에서 3,886백만원으로 47백만원 증가함.
- 나. 서울광역자활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실집행잔액(발생이자) 등 반영으로 「기타수입」금액이 당초 43백만원에서 10백만원으로 33백만원 감소 및 매입임대보증금 환수계획('23년 1,765백만원)에 따른 「융자금회수 (이자포함)」금액이 당초 800백만원에서 2,047백만원으로 1,247백만원이증가하였으며,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지원 추가 수요조사 결과 「민간 융자금」지출금액이 당초 265백만원에서 335백만원으로 7천만원이 증가함.
- 다.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「예치금」(재무활동비) 금액이 당초 4,165백만원에서 5,356백만원으로 1,191백만원 증가하여 28.6% 변경되었음.

### 라. 수입ㆍ지출계획 변경내용

#### 〈수입계획〉

#### (단위:백만원, %)

#### 〈지출계획〉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분	당초 (A)	변경 (B)	증감 (C= B-A)	증감률 (C/A)	
계	5,041	6,302	1,261	25.0	
용자금회수 (이자포함)	800	2,047	1,247	155.9	
이자수입	359	359	0	0	
기타수입	43	10	△33	△76.7	
예치금회수	3,839	3,886	47	1.2	

구분			당초 (A)	변경 (B)	증감 (C= B-A)	증감률 (C/A)	
계			5,041	6,302	1,261	25.0	
정책 사업 비	소	계	871	941	70	8.0	
	비 <del>:</del> 사	융 자 업	606	606	0	0	
	융 : 사	자 성 업	265	335	70	26.4	
행정 운영 경비	기 경	본 비	5	5	0	0	
재무 활동 비	여 :	치 금	4,165	5,356	1,191	28.6	

#### 3. 참고사항

## 가. 관계법령

○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김미경 (☎ 2133-7496)